경 리 인 코 너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휴대폰사용료 중 업무관련 부분만 손금인정됨

상담실 백종훈 차장

현대 기업들의 업무 특성상 많은 일들이 사내가 아닌 사외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와 관련된 비용이 증가되는 것은 당연하다.

외부에서의 업무수행에 따른 통신비용도 이러한 비용 중의 하나인데, 통상 기업들은 직접 휴대폰을 구입하여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하기 보다는 직원들의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보조해주는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회사에서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용료를 대신납부해주는 경우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입증만 되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 이와 관련된 세무회계처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법인세법상 업무관련 통신비만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법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손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므로, 회사명의로 되어 있는 휴대폰의 사용요금은 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나 통신비로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종업원 소유의 휴대폰 사용료를 회사에서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므로, 회사의 사규 등에 통신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내근직원이 아닌 외부 영업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정도가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외부영업직원이 아닌 내근직원의 경우는 업무연관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내 근직원에게 지원되는 휴대폰 사용료는 법인의 순수비용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우며,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한 후 연말정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이 지원한 휴대폰 보조금 등이 업무관련 통신비로 인정받더라도 법정지출증 빙영수증의 수취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법인의 경우 3만원 초과 지출에 대해서는 반드 시 계산서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지출증빙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지만, 휴대폰 요금을 보조해 주거나 대납해주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법정증 빙영수증을 수취하기가 어려운바 적격증빙불비가산세 2%가 부과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법인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해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휴대폰사용료에 대한 비용처리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적격증빙영수증 수취문제도 쉽게 해결된다.

♣ 제도 46012 - 11811, 2001. 6. 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일용근로자 제외)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납부통지서상의 금액 전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초과부분은 당해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임.

업무관련된 통신비의 매입부가가치세도 공제 가능함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휴대폰사용료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당연히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다. 물론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한다.

♣ 서이46012-11470, 2003,08,09

사업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휴대폰 사용요금 지원에 따른 회계처리

회사에서 부담한 임직원의 휴대폰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통신비로 처리하면 된다. 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업무관련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휴대폰 사용요금의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회계상으로는 통신비로 반영하였더라도 세무상으로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3 · 02 · 08 www.eAn\$e.com 9